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4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태선·김남근·박홍배

정준호 · 이학영 · 윤종군

한민수 • 박 정 • 김태년

박해철 • 맹성규 • 윤준병

이용우 · 김주영 의원

(14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1.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2.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3.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4.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재심사의 청구	² 등) ① (생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도
		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야
		<u>한다.</u>
		1.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
		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
		<u>터 30일 이내</u>
		3.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
		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
		우: 해당 외래치료 지원 결정
		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u>내</u>
		4.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
		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

	는 경우: 해당 외래치료 지
	원 연장 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